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8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조명래

환경부장관

●대통령령 제30929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위탁)”을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제5항,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제8항, 제5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에 관한 업무

2. 법 제1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에 관한 업무

제6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7조제5항”을 “제67조제8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관리 제품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에 관한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설립됨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및 정기검사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물기술인증원에 위탁함으로써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8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조명래

환경부장관

●대통령령 제30930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또는 먼지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또는 먼지의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부과금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상반기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배출부과금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11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6305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또는 먼지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또는 먼지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로 본다.

② 별표 11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로 보는 자에 대하여 2020년 상반기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의 부과기간에 대해서는 기본배출부과금과 초과배출부과금을 면제한다.

③ 별표 11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황산화물 또는 먼지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로 보는 자에 대하여 2020년 상반기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의 부과기간에 대해서는 기본배출부과금과 초과배출부과금을 면제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에 질소산화물이 추가됨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의 질소산화물에 대한 기본배출부과금의 면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종전에는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기본배출부과금과 초과배출부과금을 모두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본배출부과금만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의 초과 배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0년 8월 11일

국무총리 정 세 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장관 이 재 갑

●**대통령령 제30931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노동조합 산하조직의 설립신고) 교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지부·분회 등 산하조직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중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치는 노동조합: 시·도 단위로 설립신고
2.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중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노동조합: 개별학교 단위 또는 시·도 단위로 설립신고
3.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중 하나의 시·도 단위로 설립된 노동조합: 개별학교 단위로 설립신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단체교섭 요구 및 절차 등)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3조의2에서 “상대방”이라 한다)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려는 경우 노동조합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교섭 요구 사항 및 조합원 수(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등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교육부장관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3. 시·도 교육감
4. 국·공립학교의 장
5.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의 경우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있을 때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제5호의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표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단체교섭을 요구받은 때에는 그 교섭이 시작되기 전까지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교섭단을 구성해야 한다.